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05호)

2026. 9.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점식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1.
3. 회부연월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물관리 연구·기술개발 지원,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육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

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등

개정안은 섬 지역 중 가뭄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31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2(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이하 이 조에서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수담수화, 빗물 이용, 지하수 관리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2. 식수비축 기간, 비축량 및 수질 관리 3. 그 밖에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물관리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제15조(물수요관리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잔물의 민물화 등 대체(代替)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증가로 일부 섬 지역이 식수난을 겪는 등 섬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대두³⁾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대로

1) 「물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관리기본법」 제15조(물수요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개발·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잔물의 민물화 등 대체(代替)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3) 관련기사

- 서울신문, “겨울 가뭄’ 영호남 섬지역 식수난 우려”, 2026.2.20.자
(URL: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220019007>)

섬 지역 중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물관리 대책을 통해 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⁴⁾은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섬 지역의 물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기존 국가계획과 유사한 정책의 중복 수립·시행에 따른 정책 시행 주

- 뉴시스, “통영 옥지도 저수율 30%…가뭄 ‘주의’ 단계 진입”, 2026.3.17.자
(URL: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7_0003552130)

4)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체 간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른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 제도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⁵⁾ 지

- 5)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 나. 지하수·간이용수원 개발, 섬·해안지역 등에서의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 다.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 라. 용수공급 조정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2.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 가. 물 절약대책
 - 나.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3. 인력·장비 지원 대책

정 제도와 그 목적 및 관리체계가 유사하므로 제도의 중복 신설에 대해서는 제도 간 혼란을 초래할 우려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리고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인바,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에 규정하기보다 관련 개별법에 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⁶⁾

문 의 처
02)6788-5547

4.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5.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 섬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임.